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Ⅱ(B-2BL)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88-8003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12.04.)로부터 3년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분양일정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무순위(사후)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11.14.(금)	2025.12.29.(월)	2026.01.05.(월)	2026.01.09.(금)	2026.01.10.(토) ~ 2026.01.11.(일)	2026.01.15.(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29.(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269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14.(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547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선택품목, 단지여건, 기타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084.9584)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무순위(사후)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12.29.(월)	2026.01.05.(월)	2026.01.09.(금)	2026.01.10.(토) ~ 2026.01.11.(일)	2026.01.15.(목)
방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949-2,3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시흥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5.12.04.)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4.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계약자 부담분)를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 1/2을(각각 50%씩 납부)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분양계약자 부담분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반드시 최초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2블럭(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2층 5개동, 총 300세대 중 일반분양 270세대의 잔여 263세대

■ 주차대수 : 아파트 455대※ 용도별 주차계획 및 주차대수는 추후 설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기 : 2028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 세대수
2025910269	01	084.9584	84	263

-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실제 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바랍니다.
-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 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balcony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VAT포함)

약식 표기	동호 라인별	층수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 시	1개월 이내	2026.03.31.	2026.06.30.	2026.10.31.	2027.08.31.	2027.11.30.	2028.02.29.	
84	201동 1호 ~ 4호 205동 1호 ~ 4호	1층	6	216,472,457	351,497,543	-	567,970,000	28,398,500	28,398,500	56,797,000	56,797,000	56,797,000	56,797,000	56,797,000	56,797,000	170,391,000
		2층	6	216,472,457	357,797,543	-	574,270,000	28,713,500	28,713,500	57,427,000	57,427,000	57,427,000	57,427,000	57,427,000	57,427,000	172,281,000
		3층	7	216,472,457	370,397,543	-	586,870,000	29,343,500	29,343,500	58,687,000	58,687,000	58,687,000	58,687,000	58,687,000	58,687,000	176,061,000
		3층 (205동 4호)	1	216,472,457	382,997,543	-	599,470,000	29,973,500	29,973,500	59,947,000	59,947,000	59,947,000	59,947,000	59,947,000	59,947,000	179,841,000
		4층	7	216,472,457	370,397,543	-	586,870,000	29,343,500	29,343,500	58,687,000	58,687,000	58,687,000	58,687,000	58,687,000	58,687,000	176,061,000
		5층	6	216,472,457	382,997,543	-	599,470,000	29,973,500	29,973,500	59,947,000	59,947,000	59,947,000	59,947,000	59,947,000	59,947,000	179,841,000
		6~7층	15	216,472,457	389,297,543	-	605,770,000	30,288,500	30,288,500	60,577,000	60,577,000	60,577,000	60,577,000	60,577,000	60,577,000	181,731,000
		8~9층	14	216,472,457	395,597,543	-	612,070,000	30,603,500	30,603,500	61,207,000	61,207,000	61,207,000	61,207,000	61,207,000	61,207,000	183,621,000
		10~15층	40	216,472,457	401,897,543	-	618,370,000	30,918,500	30,918,500	61,837,000	61,837,000	61,837,000	61,837,000	61,837,000	61,837,000	185,511,000
		16층 이상	26	216,472,457	405,097,543	-	621,570,000	31,078,500	31,078,500	62,157,000	62,157,000	62,157,000	62,157,000	62,157,000	62,157,000	186,471,000
	202동 1호 ~ 4호 203동 1호, 2호 204동 1호 ~ 4호	1층	8	216,472,457	367,097,543	-	583,570,000	29,178,500	29,178,500	58,357,000	58,357,000	58,357,000	58,357,000	58,357,000	58,357,000	175,071,000
		2층	8	216,472,457	386,997,543	-	603,470,000	30,173,500	30,173,500	60,347,000	60,347,000	60,347,000	60,347,000	60,347,000	60,347,000	181,041,000
		3~4층	19	216,472,457	400,197,543	-	616,670,000	30,833,500	30,833,500	61,667,000	61,667,000	61,667,000	61,667,000	61,667,000	61,667,000	185,001,000
		5층	8	216,472,457	413,397,543	-	629,870,000	31,493,500	31,493,500	62,987,000	62,987,000	62,987,000	62,987,000	62,987,000	62,987,000	188,961,000
		6~7층	18	216,472,457	419,997,543	-	636,470,000	31,823,500	31,823,500	63,647,000	63,647,000	63,647,000	63,647,000	63,647,000	63,647,000	190,941,000
		8~9층	18	216,472,457	426,597,543	-	643,070,000	32,153,500	32,153,500	64,307,000	64,307,000	64,307,000	64,307,000	64,307,000	64,307,000	192,921,000
		10층 이상	56	216,472,457	433,297,543	-	649,770,000	32,488,500	32,488,500	64,977,000	64,977,000	64,977,000	64,977,000	64,977,000	64,977,000	194,931,000

※ 상기 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 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계약 체결 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90%는 입주 당일에 받으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일정 및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가산)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사본불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1.09.(금) ~ 2026.01.18.(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1.09.(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자격확인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유의사항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안내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2026.01.10.(토) ~ 01.11.(일) 2일간 10:00 ~ 17:00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 I Ⅱ 견본주택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949-2,3번지)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도 해당 기간 내 동시 진행하며, 추첨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방문시 작성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계약용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대리인 위임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발급)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발급)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발급)	배우자	-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국내 거주사실을 인정 받으려는 경우 · 기록 대조일을 본인 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등(①,②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당첨 사실 소명 서류	해당주택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주택공급신청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및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위임장	해당자	-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1.15.(목) 10:00 ~ 16:00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 I II 건본주택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949-2,3번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	355-0094-7987-83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예시 : 101동 301호 계약 시 “1010301김대방”)
- 본 주택의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전자등기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증	-	건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발급용)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유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		전자수입인지	본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약자본 인지세를 납부)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및 본인발급용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위임장	-	건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계약 시 유의사항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홍보 제작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더라도 정당한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해제 또는 해지가 될 수 있고,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 및 관계당국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및 대출 알선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시 유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서 대납할 경우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 모집공고상 중도금 대출 이자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건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용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정부 정책 및 금융권 사정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 정책,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 및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계약자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서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설령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금자명이 '동호수' 또는 '계약자성명'이 아니어서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 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 시점 이후 해당 은행 또는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중도금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 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 금융기관에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 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 정부대책 및 당사와 대출 금융기관 협의 내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일자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이를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예비입주자가 존재하는 경우 진행)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01.16.(금) 11: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01.16.(금)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및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잔 금
		(계약 시)	(입주지정 시)
84	8,130,000	1,000,000	7,130,0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농협	355-0094-7954-33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나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BOX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동 배치에 의해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설치 가구의 배치, 규격,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안내 - 기타 추가 선택품목 및 마이너스 옵션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5.11.14.(금)]를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border="1"> <thead> <tr> <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tr> </tbody> </table>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9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45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사전 방문점검안내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한 사전방문(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8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멸종위기종 서식지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각종 파업(당해 건설공사 진행에 연관된 각종 생산활동 및 업무 중단 등), 원자재 수급지연(국제 정세 등으로 인한 지연 등)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이를 분양 잔여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길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 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세대(전기, 수도, 난방 등)관리비 및 공동(일반)관리비 일체]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세대(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관리비 및 공동(일반)관리비 일체] 등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세대(전기, 수도, 난방 등)관리비 및 공동(일반)관리비 일체]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공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영수증, 중도금 대출이자(대납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 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 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피해 및 공과금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전 세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예정인 세대는 중도금 대출 상환 및 분양대금 및 제반비용 전액 납부하고, 입주지원센터에서 인테리어 공사내역서, 확약서(당사 양식) 작성 및 관리사무소 세대 검침 후 공사 시작이 가능합니다.(인테리어 공사는 아파트 준공일 및 잔금납부 이전에는 불가능함)
- 아파트 사용승인 전 입주예정자가 독단으로 견본주택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여 견본품목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고발조치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승인하에 아파트 사용승인 전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세대에 관리비[세대(전기, 수도, 난방 등)관리비 및 공동(일반)관리비 일체] 부과가 시작되며, 공사 진행 중 매일 세대 열쇠 반납 및 수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 등에 따른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합니다.
- 하자보수 시, 당초 시공된 마감재 및 재료 등을 통해 보수가 진행됩니다.(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및 보상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117,491,920,000	제01212025-101-0005400호

■ 분양보증 주요 내용

- 기타 분양보증 주요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5.11.14.(금)]를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이림엔지니어링	(주)자람엔수엔지니어링	(유)이에프
감리금액	1,402,930,100	513,418,000	100,586,000	103,455,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대항목			세분류	금 액	대항목			세분류	금 액	대항목			세분류	금 액	
택 지 비 (4)			택지공급가격	46,685,520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건 축 비 (23)	철근콘크리트공사	18,806,184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기계 설비 (9)	오수·배수설비공사	607,000	
			기간이자	4,454,017				용접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420,000	
			필요적 경비	2,438,747				조적공사	653,875				난방설비공사	1,080,000	
			그 밖의 비용	11,364,008				미장공사	979,604				가스설비공사	200,000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토 목 (13)	토공사	2,101,781				단열공사	828,076				자동제어설비공사	200,000	
			흙막이공사	-				방수·방습공사	475,063				특수설비공사	993,000	
			비탈면보호공사	-				목공사	1,081,425				공조설비공사	-	
			옹벽공사	-				가구공사	1,231,503		그밖의 공종 (4)		전기설비공사	3,876,985	
			석축공사	83,842				금속공사	1,414,856				정보통신공사	1,148,223	
			우·오수공사	917,633				지붕 및 홀통공사	209,500				소방설비공사	2,560,251	
			공동구공사	-				창호공사	1,896,897				승강기공사	1,269,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유리공사	600,550				일반관리비	3,182,767	
			도로포장공사	886,726				타일공사	852,957		간접비 (6)	그밖의 공사비 (2)	이윤	8,935,997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200,000				돌공사	1,230,693				설계비	1,011,537	
			정화조 시설공사	-				도장공사	436,837				감리비	2,120,389	
			조경공사	2,073,102				도배공사	456,242				일반분양 시설경비	4,688,551	
			부대시설공사	1,044,084				수장공사	555,813				분담금 및 부담금	6,354,446	
			공통가설공사	2,626,491				주방용구공사	94,390				보상비	-	
			가시설물공사	91,392				그 밖의 건축공사	1,320,974				기타사업비성경비	4,850,351	
	건 축 비 (23)		지정 및 기초공사	1,788,162			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	425,000				그 밖의 비용	13,381,484	
			철골공사	139,675				급탕설비공사	520,000				합 계	167,845,600	

■ 내진 성능 및 능력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켈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최대유효지반가속도	메르켈리 진도 등급 (MMI 등급)
0.204(g)	VII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5 ~ 7.8M	2.75 ~ 3.3M	2.8M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신청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 목	심사신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차액	조정사유	
택지비	법정 택지이자	4,454,017,695	4,454,017,695	-	적정
가산항목	제세공과금	2,438,747,226	2,438,747,226	-	적정

- 14 -

	말뚝박기 공사비		5,181,178,500	4,196,754,585	984,423,915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8,638,731,900	6,133,499,649	2,505,232,251	조정
	택지와 관련된 경비		1,033,754,706	1,033,754,706	-	적정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21,746,430,027	18,256,773,861	3,489,656,166	-
건축비 가산항목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1,521,280,174	1,232,236,940	289,043,234	조정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	홈네트워크	4,218,731,100	3,670,296,057	548,435,043	조정
		초고속통신특등급	874,291,500	760,633,605	113,657,895	조정
		에어컨냉매배관	1,941,760,800	1,572,826,248	368,934,552	조정
		기계환기설비	1,894,440,600	1,534,496,886	359,943,714	조정
	공동주택성능등급		2,564,104,255	2,564,104,255	-	적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1,089,958,500	1,089,958,500	-	적정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388,917,900	315,023,499	73,894,401	조정
	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기	192,277,800	165,358,908	26,918,892	조정
	사업승인조건	외관특화	1,821,352,500	-	1,821,352,500	조정
		법정초과조경	218,069,145	-	218,069,145	조정
	분양보증수수료		498,596,026	477,988,335	20,607,691	조정
	소 계(건축비 가산항목)		17,223,780,300	13,382,923,233	3,840,857,067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분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단열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해당없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적용)

[illegible]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구분	등급 기준	등급	비고
				설치항목(1)	설치항목(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 번호 제 2023-101-036 호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23년 06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 건물명 이름 주 소 대방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빌딩 (마곡동) 건물소재지 이름 주 소 서울거모지구 B-281 경기도 서울서거모동 1196-1 인증대상 대상건물 구분 ☒ 아파트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족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준대형위크인물 ☐ AAA (준 3T) ☐ AAA ☐ AA ☐ A ☐ 준A 2025년 10월 0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항목	1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Cat5e 4페어 이상	침입감지기	-	
		2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16C 이상	차량통제기	-	
		3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전자경비시스템	-	
		4	통신배관실(TPS)	무인택배시스템	-	
		5	단지서버실	욕실폰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일괄소등제어	-	
		7	가스밸브제어기	디지털도어락	-	
		8	조명제어기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	-	
		9	난방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	
		10	현관방범감지기	대기전력차단장치	-	
		11	주동현관통제기	-	-	
		12	원격검침전송장치	-	-	

■ 명칭

- 공동주택의 명칭은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 II"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부상 주소체계에는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지적공부정리 등이 완료될 때까지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본 단지의 대지는 주거와 비주거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대지분할 및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멸종위기종 서식지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 및 대납이자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입주 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표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필히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수인계된 이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세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예정인 세대는 중도금대출 상환 및 분양대금 및 제반비용 전액 납부하고, 입주지원센터에서 인테리어 공사내역서, 확약서(당사 양식) 작성 관리사무소 세대 검침 후 공사시작이 가능합니다.(인테리어 공사는 아파트 준공일 및 잔금납부 이전에는 불가능함)
- 아파트 사용승인 전 입주예정자가 독단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견본주택 인테리어 업체 계약하여 세대 내 사전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고발조치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세대 해약 및 고발조치와 더불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바, 반드시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으신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불법 인테리어를 통한 폐자재 증가 및 주변 소음발생을 통한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예정자의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재산권 확보를 위한 절차)
- 대출을 받은 세대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완료 전에는 전(월)세입자의 전입이 불가하고, 등기 전 전(월)세입자 전입 시 용자금이 전액 회수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분양관련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5.11.14.(금)]를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 기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상호	대방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11층(마곡동, 대방빌딩)
법인등록번호	115911-0069601
대표번호	02-2181-4300

☐ 홈페이지 주소 : <https://elium-gm.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949-2,3번지

☐ 분양문의 : ☎ 1688-8003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경미한 설계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